의료기기법 시행령

[시행 2025. 2. 9.] [대통령령 제35250호, 2025. 2. 7., 일부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 (의료기기정책과) 043-719-3778, 3783 보건복지부 (약무정책과-제10조의2제2호) 044-202-2493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삭제 <2019. 10. 22.>

제3조 삭제 <2019, 10, 22.>

제3조의2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) ①「의료기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조사・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 <개정 2019. 10. 22., 2020. 3. 3.>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
- 6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·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·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조사·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·심의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9. 11.]

[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<2018. 9. 11.>]

제3조의3(위원의 해촉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11., 2019. 10. 22.>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5.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[본조신설 2015. 12. 31.]

[제3조의2에서 이동 <2018. 9. 11.>]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 1. 5., 2022. 1. 18.>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2. 1. 18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소집하고,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2. 1. 18.>
 -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·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3. 3. 23.>
 -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삭제 <2022. 1. 18.>

제7조(분과위원회 등) ① 삭제 <2019. 10. 22.>

-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19. 10. 22.>
- ③분과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분과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분과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- ⑥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0. 6. 30., 2019. 10. 22.>
- ⑦ 제6항에 따른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분과 위원회"는 "소분과위원회"로, "분과위원장"은 "소분과위원장"으로, "분과위원장"으로 본다.<신설 2016. 5. 31., 2019. 10. 22.>
- ® 소분과위원회가 심의・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또는 다른 소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・의결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6. 5. 31.>
- ⑨분과위원회와 소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0. 6. 30., 2013. 3. 23., 2016. 5. 31.> [제목개정 2016. 5. 31.]
- 제8조(연구위원)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・검토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 -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 연구한다.
 - 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- ④위원회는 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- ⑤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3. 3. 23.>
- 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.
 - ②간사와 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3. 3. 23.>
- **제10조(수당과 여비 등)*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,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여비를,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조사·연구 등을 위한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, 2010. 3. 15, 2013. 3. 23, 2022. 7. 19.>
- 제10조의2(판매업자 · 임대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한 자(이하 "판매업자"라 한다) 또는 임대업신고를 한 자(이하 "임대업자"라 한다)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<개정 2022. 7. 19.>
 - 1.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안전과 관련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판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[본조신설 2013. 3. 23.]

제10조의3(광고의 자율심의 대상)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"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.

- 1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
- 2. 「방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
- 3. 「방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'방송', 'TV', '라디오'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
- 4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
-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"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(Social Network Service)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.
- ③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
- 1.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(字句)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광고의 문구, 도안 등의 배 치를 변경하려는 경우
- 2.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으로 심의 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
- ④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"의료인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말한다.
- 1. 「의료법」제2조에 따른 의료인
- 2. 「의료법」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
- 3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

[본조신설 2021, 6, 15.]

[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6으로 이동 <2021. 6. 15.>]

- 제10조의4(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(이하 "자율심의기구"라 한다)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심의기준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한 심의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.
 -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고를 심의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.
 -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.
 - ④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 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.
 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해당 광고를 심의한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해야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15.]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0조의5(자율심의기구의 구성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원 또는 조합원 등 구성원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22. 7. 19.>
 - 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제조업자"라 한다)
 - 2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수입업자"라 한다)
 - 3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를 한 자
 - 4. 판매업자
 - 5. 임대업자
 -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비자단체를 말한다.
 - 1. 「소비자기본법」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을 것
 - 2.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
 -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 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(의료기기 또는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)
 - 2. 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
 - ④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의 수행을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 [본조신설 2021. 6. 15.]
- 제10조의6(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 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한다. <개정 2018. 9. 11.>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. <개정 2018. 9. 11.>
 - 1. 법 제31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유통정보 및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(이하 "의료기기통 합정보"라 한다)의 수집・조사・가공・이용 및 제공
 - 2.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
 - 3.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기 표준코드 관리
 - 4. 의료기기통합정보 및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제출・등록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・보급 등 지원
 - 5.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·관리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6.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·관리되는 의료기기통합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·교육 및 홍보
 - 7. 그 밖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[본조신설 2017. 8. 1.]

[제10조의3에서 이동 <2021. 6. 15.>]

제11조(과징금의 산정기준)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·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1. 10. 7., 2013. 3. 23., 2021. 1. 5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같다)은 의료기기취급자의 사업규모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10. 7., 2013. 3. 23., 2019. 5. 21.>
- **제11조의2(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)**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.
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1. 18.]

- 제12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)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, 해당 과징금의 금액, 이의방법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0. 7., 2013. 3. 23., 2019. 5. 21., 2022. 1. 18.>
 -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9. 5. 21., 2023. 12. 12.>
 -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,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9. 5. 21.>
 - ④ 삭제<2021. 9. 24.>
- 제12조의2(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) ①법 제3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0. 7, 2013. 3. 23, 2019. 5. 21.>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<개정 2015. 6. 30., 2019. 5. 21., 2020. 3. 24.>
 -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,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5. 21.>

[본조신설 2007. 7. 3.]

- 제12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. 18.>
 - 1. 「의료기기법」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
 - 2. 의료기기의 제품명
 - 3. 처분 대상 업종명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업체명(기관명) 및 소재지
- 5.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
- 6. 처분 내용, 처분일 및 처분 기간

[본조신설 2019. 5. 21.]

[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<2019. 5. 21.>]

제12조의4(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에게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 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9. 11.>

[본조신설 2011. 10. 7.]

[제목개정 2018. 9. 11.]

[제12조의3에서 이동 <2019. 5. 21.>]

- 제12조의5(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) ① 법 제43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・수입업자"란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(이하 "인체이식형의료기기"라 한다)의 제조업자・수입업자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・수입업자는 제외한다.
 - 1. 수출만을 목적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
 - 2. 수출만을 목적으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
 - 3.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
 - 가. 해외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가입 중인 보험 또는 공제가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
 - 나. 가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 국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까지 보장할 것
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 (이하 "의료기기책임보험등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 험
 - 2.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된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

[본조신설 2022. 7. 19.]

- **제12조의6(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)** ①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.
 - 1. 사망의 경우: 1명당 1억 5천만원. 다만,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 - 2. 부상의 경우: 1명당 3천만원
 - 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(이하 "후유장애"라 한다)가 생긴 경우: 1명당 1억 5천만원
 - 4.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: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
 - 5.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: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
 - 6.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이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: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 중 사망한 날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을 뺀 금액
 - ② 법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는 인체이식형의료기 기 판매일의 전날까지 의료기기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.
 - ③ 의료기기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· 수입업자(제12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험회사 등의 명칭,계약자, 보험금액, 유효기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· 수입업자: 의료기기책임보험등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
- 2. 제12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: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·수입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를 최초로 수입하는 날의 3일 전
- ④ 의료기기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되거나,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을 갱신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갱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회사 등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7. 19.]

제13조(권한의 위임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6. 30., 2016. 5. 31., 2017. 8. 1., 2019. 5. 21., 2022. 1. 18., 2025. 2. 7.>

- 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
- 2. 삭제 < 2015. 6. 30.>
- 3.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
- 4. 삭제 < 2015. 6. 30.>
- 5. 삭제 < 2015. 6. 30.>
- 6.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
- 7.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・휴업・재개・변경 신고의 수리
- 8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
- 9. 삭제 < 2015. 6. 30.>
- 10.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업허가
- 11. 삭제 < 2015. 6. 30.>
- 12.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
- 13.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・휴업・재개・변경 신고의 수리
- 13의2.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
- 13의3.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
- 13의4.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물(異物)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
- 13의5.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이물 발견 사실,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의 공표
- 14.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명령, 출입, 검사, 질문 및 수거
- 14의2. 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 및 조치 해제
- 15.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
- 16.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, 회수, 폐기,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
- 17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, 봉함・봉인, 그 밖의 필요한 처분
- 18.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
- 19.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, 품목류・품목의 제조・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
- 20.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
- 21. 법 제3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, 품목류・품목의 제조・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
- 21의2.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, 교육,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
- 22. 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증의 갱신
- 23.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 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
- 24.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삭제<2020. 9. 8.> [전문개정 2011. 10. 7.]

제13조의2 삭제 <2021. 9. 7.>

제13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(법 제4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이하 "건강정보"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의료기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보로 한정한다),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는 제외한다. <개정2013. 3. 23, 2015. 6. 30, 2017. 8. 1, 2019. 5. 21, 2022. 12. 20, 2025. 2. 7.>

- 1.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
- 2.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휴업·폐업·재개·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
- 5. 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, 조건부허가, 변경허가 및 휴업・폐업・재개・변경 신고 등에 관한 사무
- 6. 법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, 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
- 7. 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, 변경신고 및 폐업·휴업·재개·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7의2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·변경신고 및 폐업·휴업·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7의3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및 사용자의 자료의 작성·보존·제출에 관한 사무 7의4. 법 제31조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보고, 회수 및 통보 등에 관한 사무
- 8.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・검사・질문・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 발급에 관한 사무
- 9.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
- 10.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· 징수에 관한 사무
- 11. 법 제3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
- 12. 법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
- 13. 법 제47조에 따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
- 14. 법 제49조에 따른 허가증, 인증서 및 신고수리서의 갱신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2. 1. 6.]

[제13조의2에서 이동 <2018. 9. 11.>]

제1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1. 10. 7.]

부칙 <제35250호,2025. 2. 7.>

이 영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1항제13호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